고흥군의회 공고 제2021 － 호

고흥군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고흥군의회의장

1.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3건 개별내용 참조

2. 예고기간

○ 2021. 4. 8. ~ 2021. 4. 14. (7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 주　소 :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59542)
- 전　화 : 061-830-6065 (FAX 061-830-5595)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의사팀)

마. 문의전화 : 061-830-6065

- 입법예고 목록 -

○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안 ····· 1

○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류제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7

발의연월일: 2021. 3 . 30 .
발 의 자: 류제동(1인)
찬 성 자: 박미옥,류동철,김상봉,김민열

1. 제안이유

○ 2019년 12월 25일「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13조)

마.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7조)

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됨.(안 1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련 법령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고흥군 조례 제 호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나.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
   다. 고흥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마.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
   바.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제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8

발의연월일: 2021. 3 . 30 .
발 의 자: 류제동(1인)
찬 성 자: 박미옥,류동철,김상봉,김민열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련 법령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고흥군 조례 제 호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복제·소지·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라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

발의연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이재학 의원

1. 제안이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층수 기준 제시 및 토지이용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안 별표4)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 법령 : 「고흥군 군계획 조례」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조례 제 호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2층 이하의 건축물” 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제4호 관련) ※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어. (생략)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제4호 관련) ---------- 15층 ---- ---------- 가. ~ 어.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각호 외의 부분을 1항으로 개정 2018. 12.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1. 2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11. 2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11. 2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1. 2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11. 2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 11. 2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11. 2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②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 (신설 2018. 12. 6.)

【별표 4】(개정 2019. 7. 3.)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제4호 관련)

※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을 감안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의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금융업소 ·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별표 3 하목의 공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참고자료]

전남 시·군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현황

(단위 : 층/ 명)

시군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목포	강진	곡성	구례	담양	무안	보성
층수	18	-	-	-	-	18	18	15	15	15	18
인구	284,238	284,866	153,332	118,251	227,178	35,042	28,514	25,925	47,199	87,630	40,921